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62
----------	-------

발의연월일 : 2025. 7. 14.

발 의 자 : 유상범 · 조배숙 · 송석준
고동진 · 엄태영 · 박상웅
박충권 · 서명옥 · 김선교
인요한 · 김재섭 · 조정태
정점식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 보호를 위해 각종 단속 사무를 전담하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상 특별관리임산물에 관한 수사권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적 산양삼 유통·판매에 대한 미흡한 대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최근 6년간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1,618건에 달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름. 문제는 단속의 후속 조치로서 계도·홍보가 94.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수사 의뢰·협조는 5.7%에 그치는 실정임. 이에 산양삼 위조·혼입 등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체의 명의 대여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단속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양삼 품질관리와 산림기술자 관련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수행할 직무범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시켜 단속의 실효성과 현장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지명범위를 정비함(안 제4조,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특별관리임산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시행업 등록증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 관련 산림 관계 법률을 명확히 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안 제6조제5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을 “6급·7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으로,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을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로, “보호·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을 “관계”로,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5조제5호”로, “다음”을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산림 보호·경영 등에 관한 범죄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목재제품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범죄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별관리임산물에 관한 범죄

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시행업에 관한 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
공무원은 사범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4의2. (생 략)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
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
무하며 산림 보호·경영 사
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
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
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
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
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
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
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
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목
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
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
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

-----.

1. ~ 4의2. (현행과 같음)

5. -----
-----제외한다), 특별
시·광역시·도 및 시·군·
구-----관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삭 제>

<삭 제>

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
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
지의 지방공무원

8. ~ 53. (생 략)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
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
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4의2. (생 략)

5. 제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
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산림 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8. ~ 53.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제5조제5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
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률」, 「민간인 통제선 이
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
방사업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u>나.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u> <u>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u> <u>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u> <u>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u> <u>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u> <u>발생하는 「목재의 지속</u> <u>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u> <u>률」에 규정된 범죄</u> <u><신 설></u> <u><신 설></u>	<u>법률」, 「산림보호법」,</u> <u>「산림복지 진흥에 관한</u> <u>법률」, 「산림자원의 조</u> <u>성 및 관리에 관한 법</u> <u>률」, 「산림재난방지</u> <u>법」, 「산지관리법」,</u> <u>「석재산업 진흥에 관한</u> <u>법률」, 「소나무재선충병</u> <u>방제 특별법」, 「수목원</u> <u>·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u> <u>관한 법률」에 규정된 산</u> <u>림 보호·경영 등에 관한</u> <u>범죄</u> <u>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u> <u>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u> <u>된 목재제품 및 미이용</u> <u>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u> <u>범죄</u> <u>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u> <u>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u> <u>된 특별관리임산물에 관</u> <u>한 범죄</u> <u>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u>
--	---

6. ~ 50. (생략)	<u>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시행업에 관한 범죄</u> 6. ~ 50. (현행과 같음)
----------------------	---